



## Web Contents



2024년 04월 09일 17시 49분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안내

2022.08.22 조회수 341 등록자 김지송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 ○ 이용범위(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 이용방법

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업무처리절차

1. 의료기관·이송기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자 미수금 발생 3. 의료기관·이송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 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 ○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 상환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은 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목록

이전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안내

다음글

원송이투창 관리(의료기관 대상) 교육 영상 배포 ...



**MokPo - Si**  
**Web Contents**

